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검 토 보 고

〈세계한인무역협회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등〉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90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4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8
2. 조문별 검토	11
가. 제명 및 목적·정의	11
나. 법인의 설립 및 정관	16
다. 법인의 사업 및 건의·자문역할	19
라.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	22
마. 총회·이사회 및 사무국 설치	25
바. 보조금·출연 및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28

사. 협회의 회계 및 지도·감독	32
아. 부칙	35
※ 참고자료	38
참고1. 세계한상대회 개요	38
참고2.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단체 현황	3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21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6.
3. 회부연월일 : 2025.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전 세계 73개국 153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재외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해외 경제 네트워크로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교류를 지원하고 재외동포 무역인 및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 6단체’가 국내 다양한 유형의 기업과 경제인을 대표하며 활발히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지원 부족과 해외 활동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이 있어 재외동포 경제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설립하여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연구·분석과 세계한인경제인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세계한인경제인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임원, 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함(안 제20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Economic and Trade Associations; World-OKTA, 이하 “OKTA”)는 1981년 설립되어 40년 이상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74개국 154개 지회를 보유하고 있음.

[표 1]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 개요

- 설립연도 : 1981년 4월 2일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허가번호 제94-1호, 법인등록 1994. 1. 13.)
- 법적지위 :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허가법인
- 설립배경 : 모국 경제발전과 무역증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회원 간 교류를 통해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 민족 경제 공영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
- 해외지회 : 74개국 154개 지회 보유 (2025년 10월 1일 기준)
- 주요 사업 및 활동
 - 세계대표자대회/세계한인경제인대회(EXPO), 지역경제인대회 연례 개최
 - 해외지사화사업, 탄소기업 해외수출지원사업,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사업 등
 -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해외현지 교육, 모국방문교육,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2022년말 기준 708만 1,510명으로 외국국적 동포(외국시민권자) 461만 3,541명, 재외국민 246만 7,969명으로 구성됨¹⁾. 이 중 OKTA는 7,000여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차세대 경제인 21,000여명으로 구성된 주요 재외동포 경제단체임.

OKTA는 산업통상부 소관 수출기반활용사업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지사화사업²⁾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재교부받거나, 탄소기업 해외수출지원 사업,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사업 등 각종 정부수행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세계대표자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EXPO), 지역경제인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전세계 한인 경제인간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해외현지 교육, 모국 방문교육,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만, 현재 OKTA는 「민법」 제32조³⁾ 및 「산업통상부장관 및 그

1)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 현황 총계

2) 지사화 사업: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https://www.exportvoucher.com/osp/portal/busiGuide/ospBusiGuide>

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⁴⁾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간법인으로서 각종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에 설립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이에 비해 이른바 경제 6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개별법률상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제정안은 기존 OKTA에 대한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사업, 대통령 자문·건의 등의 역할을 규정하며 이에 대한 경비 보조 근거도 마련하여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고자 함. 이를 통해 OKTA가 재외동포 경제단체 중 대표기구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 및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기존 경제 6단체 중에서도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역시 별도로 법률상 설립근거 없이 사단법인으로 운영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되고 있고, 전 세계 한인들을 대표·대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한인총연합회 역시 외교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동 제정안이 OKTA에 재외동포청의 고유업무를 일부 부여하여 산업통상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므로 타 부처가 재외동포청의 업무소관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고,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참고1 세계한상대회 개요 및 참고2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단체 현황 참조⁵⁾)와 비교하면, OKTA는 전 세계 주요 재외동포 경제단체 중 하나일 뿐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단체 전체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5) 전 세계 주요 동포경제단체 총 27개(총 회원수 약 10만명)로 구성되며 OKTA도 포함됨.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으로,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 및 제2조는 동 제정안의 목적 및 세계한인경제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협회”)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무소·해외지부 등을 설치하는 한편 정관을 마련하도록 하며, 제6조 및 제7조는 협회가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교류·협력 및 홍보 사업 등을 수행하고 대통령 건의·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및 제9조는 임원의 구성과 역할,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총회의 구성, 회의방식, 의결정족수를 규율하는 한편, 사업계획·예결산, 정관변경 등 협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는 이사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제15조 및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등을 마련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협회의 사업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예산서 승

인, 결산서 제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동 법률을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에 따른 협회가 기존 사단법인 OKTA의 지위 등을 승계하도록 함.

[표 2] 제정안 목차

조 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및 설립)
제4조(사무소 등의 설치)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건의·자문)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총회)
제11조(회의방식 및 의결정족수)
제12조(총회 의결사항)
제13조(이사회)
제14조(사무국)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제16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7조(사업연도)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9조(결산서 제출)

조 문
제20조(지도·감독)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기존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지위 등 승계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목적·정의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제정안의 제명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이고, 안 제1조는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연구분석과 협력증진 사업을 수행하여 국가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표 3]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설립하여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연구·분석과 세계한인경제인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OKTA는 당초 영문약칭에서 보듯이 ‘세계한인무역협회’였으나, 2025년 4월 30일 조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였고, 10월 14일에 이에 따른 산업통상부 허가를 받음. 제정안의 제명은 현재 조직명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반영하여 경제인 지원 역할을 보다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음으로, 목적 조문은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연구분석 및 협력증진 사업 수행’을 정책수단으로 삼아 ‘국가의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그런데 ‘경제영토’란 물리적인 영토와는 별도로 한 나라의 경제가 운용되는 범위나 경제력이 미치는 범위⁶⁾를 일컫는 말로써 주로 FTA 체결효과 등을 설명할 때 수사적으로 사용함. 이에 비해 법률상 ‘영토’란 「헌법」상 물리적·공간적인 범위(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되어 있는데, 동 제정안의 목적조문에 ‘경제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법률상 ‘영토’ 용어와 혼용되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2) 정의(안 제2조)

안 제2조(정의)는 세계한인경제인을 국민(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으로서 주된 근무지가 해외인 사람으로 정의함.

[표 4]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세계한인경제인”이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주된 근무지가 해외인 사람을 말한다.

우선, 제정안은 국민의 범위에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하도록 하는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⁷⁾가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검색

7)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

수 있음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도 세계한인경제인 범주에 포함될 필요는 있으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개념상 국민에 포함하기 보다는 “국민 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로서” 등으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주된 근무지가 국내인 자는 사실상 국내경제인으로 보아 제외하고 주된 근무지가 해외인 자에 대해서만 세계한인경제인으로 정의하고자 함.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존 경제단체가 국내경제인 등을 대표하고 있고, 동 제정안은 주로 해외에 경제활동기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OKTA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은 현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로 한정되고, 국내 기업회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연회비 납부하여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8) 「재외동포기본법」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표 5] OKTA 정관상 회원 자격 및 구분

제2장 회원	
제7조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자로 한다.	
1. 정회원	: 현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로서 지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준회원	: 차세대무역스쿨을 수료한 자로서 지회 소속으로 본 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
3. 명예회원	: 국적을 불문하고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찬동하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집행부가 인정한 자
4. 특별회원	: 국적을 불문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집행부가 인정한 자
5. 국내 기업회원	: 한국에 소재하고 있고, 협회를 통해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이사(CEO)인 자. 연회비 납부의 의무는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없음
6.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은 회장의 임기에 준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데, 통상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개념이 있지만 자연인에 대해서는 주소, 거소 등의 개념을 단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근무지 및 이에 따른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하고, 그 구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표 6]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규정 등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u>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u>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u>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
--

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동 제정안은 「소득세법」에 따른 주된 근무지 개념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주된 근무지 개념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는 근로소득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해외창업 직후나 해외투자가 진행 중인 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와 같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따라서 주로 해외에 경제활동기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정안 취지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법인의 설립 및 정관

제정안은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안 제3조), 정관에 따라 주된 사무소 및 해외지부를 설치하도록 하며(안 제4조),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하며 정관 변경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표 7]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3조(법인격 및 설립) ①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등의 설치)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현재 OKTA는 「민법」 및 「산업통상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설립시 허가(1994년)를 받았고, 이후 정관변경시에도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있음.

또한 2025년 10월 현재 정관에 따른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전세계 74개국에서 총 154개 지회가 활동 중임. 즉,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안 제3조는 OKTA를 사단법인 성격으로 설립하고, 안 제4조는 정관에 따라 협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 해외지부를 설치하도록 함.

다음으로,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이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는 이를 포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현재 정관에서도 사업(제4조), 조직(제11조), 집행부(제12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정관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민법」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표 8] 사단법인 정관작성시 포함사항

제 정 안	「민법」 제40조
1. 목적	1. 목적
2. 명칭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제 정 안	「민법」 제40조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4. 자산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해당사항 없음

다. 법인의 사업 및 건의·자문 역할

안 제6조는 협회가 세계한인경제인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협회가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할 수 있도록 함.

[표 9]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6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세계한인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3. 세계한인경제인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및 협력 4. 신문·방송·잡지 등을 활용한 세계한인경제인 관련 홍보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건의·자문) 협회는 해외경제 동향 분석, 해외경제인 대상 여론 수렴 등을 토대로 세계한인경제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우선, OKTA는 현재 정관에 따라 다음 19가지 유형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행하고 있음. 안 제6조는 현행 사업을 ‘정책·제도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등 주요 유형으로 구분하여 법률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표 10] 정관(제4조)에 따른 OKTA 사업 유형

1. 대한민국 제품의 수출 촉진 활동과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 1. 대한민국 경제 및 무역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과 건의**
2. 회원간 경제 및 무역정보 제공 및 간행물 발간, e비즈니스 지원사업
3. 차세대 경제무역인 양성 사업
4. 해외 취업지원 및 인재 양성 사업
5. 세계한인경제무역인상 등의 포상 관련 사업
6. 회원간 친선 교류 및 복리 증진 사업
7. 신규지회 발굴 및 지회 육성사업
8. 장학회 설립을 통한 교육지원 사업
9. 지회 소재국 정부 및 경제단체와 교류 증진
10. 한민족 문화 세계화 보급 사업
11. 지회 소재국 지역사회 봉사 활동
12. 정부기관 보조행정 서비스업 및 기타 공공관계 행정 서비스업
13. 광고매체 판매업 및 기타 광고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회관건립 및 기타 부동산 임대업
15.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수익사업
16. 전자상거래업
17. 정보서비스업
18.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그리고 안 제7조는 대통령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는 현재 정관에 따른 사업 중 “2. 대한민국 경제 및 무역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과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률상 대통령 자문 및 건의 역할은 통상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⁹⁾가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부처 사업 수행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병행되거나 설립허가를 한 소관부처에 대해 건의하

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

는 방식으로 자문 및 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경우에도 법률상 사업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에 대한 자문·건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1] 경제단체의 법률상 자문·건의 역할 규정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①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정책건의

라.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

안 제8조는 협회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및 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이들의 선임·임명방식 및 회장직무대행 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하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위임하며, 안 제9조는 정관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표 12]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8조(임원)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30명 이내의 부회장과 이사장·부이사장·이사·감사·위원장을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30명 이내의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부회장 중 1명을 수석 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⑦ 그 밖에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우선, 현재 정관(제12조 집행부)은 집행부를 회장 1인과 10인 이내의 지명부회장, 그리고 대륙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해외 지역부회장

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지명부회장 및 해외 지역부회장 인원을 합쳐 총 30명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리고 제정안은 이사장·부이사장·이사·감사 및 위원장 직위¹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정관상으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통상위원회, 차세대위원회, 글로벌마케터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위원장 직위가 존재함. 그러나 동 제정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 없이 위원장 직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관으로 정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¹¹⁾에 따른 결격사유도 적용되도록 하여 국가공무

10) 참고로 정관 제16조 이사회에 따르면, 회장, 이사장,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부회장, 부이사장, 감사,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됨. 제정안은 당연직 상임이사 중 명예회장을 제외한 이들을 임원 규정에 명시함.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원 수준의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러나 결격사유 중에는 공무원 재직 중 범죄나 공무원 직위를 전제로 하는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정한 준용 또는 간주 내용 없이 사단법인에 대해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총회·이사회 및 사무국 설치

안 제10조는 총회를 회장·부회장·부이사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며, 안 제11조는 총회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방식을 규정하며, 안 제12조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변경, 협회 해산 및 임원 임면 등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사항을 규정함.

그리고 안 제13조는 협회에 이사회를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사무국을 두어 협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표 13]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장·부이사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방식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가능하며,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이사회) ①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사무국) 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우선, 안 제10조에 따른 총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회장·부회장·이사장·부이사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장 등으로 추정되나 특별위원회는 제정안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음.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관상 위원회는 통상위원회, 차세대위원회, 글로벌마케터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총회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만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특별위원회에 대한 별도 설치근거 없이 위원장 직위만 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11조에 따른 회의방식 및 의결방식을 살펴보면, 현행 정관은 총회를 10개국 이상의 회원 300인으로 개최하고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표 14] 정관상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26조 정족수 및 의결방법

총회의 정족수는 10개국 이상의 회원 300인으로 한다. 총회의 결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 합병, 해산의 경우에는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¹²⁾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및 현행 정관에 따른 ‘출석 구성원’의 2/3가 아닌 ‘총사원’을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12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주요사항, 안 제13조에 따른 이사회 설치·운영 및 의결기능, 안 제14조에 따른 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등은 현행 정관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보임.

다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상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정관 내 관련 조문이 법체계상 정합성있게 정비될 필요가 있음.

12)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바. 보조금·출연 및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안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의 사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단체는 금전 등을 출연·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표 15]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6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현재 OKTA는 국가로부터 92억 2,500만원(2025년 기준) 규모의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출연금 사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각종 보조사업을 위탁·집행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표 16] OKTA 수행 국고보조금 예산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지원기관	사업명	'23	'24	'25
산업부	KOTRA	교포무역인 네트워크사업	3,500	3,200	3,200
		해외지사화사업	4,105	3,603	3,603
		글로벌 해외취업지원사업	1,324	1,324	1,324
	탄소진흥원	JEC World 2025	50	110	78
		2025 탄소기업 해외진출지원	500	500	300
중기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750	232	67.5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수출마우처 사업	216	-	-
	KIAT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 사업	250	-	-
노동부	한국산업 인력공단	K-move	250	-	-
농림부	aT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	330	220	220
해수부	한국수산회	대륙별 마케팅 지원사업	-	-	500
합 계			11,275	9,189	9,225

그리고 제정안은 법인, 개인 또는 단체가 협회에 출연·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현행 정관상 협회의 재정은 회비, 지원금, 기부, 찬조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¹³⁾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OKTA 설립시 정부출자·

1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출연이 없었고, 기존 국고 보조금 등은 위탁사업을 수행·운영하기 위한 자금이었음. 따라서 OKTA가 동 제정안에 따라 설립근거가 마련되더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국·공유재산 대부시 사용료에 관한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조문은 일반재산 대부시에도 준용됨.

다만,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르면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이와 같음.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유상대부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한 기존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적십자사),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

「작은도서관진흥법」(사립 작은도서관) 등에서 복지시설이나 비영리 문화시설에 대해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OKTA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계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 및 모국 경제발전 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일정 수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OKTA가 수행하는 세계한인경제인간 교류지원 또는 해외 취업지원·마케팅·컨설팅지원 사업 등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한적십자사 활동, 장애인복지시설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비해 공공성이 낮은 편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안 제16조의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은 유상사용이 원칙이고, 개별법상 특정 단체에 대한 대부료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있어 손실 발생 및 타 기관·단체·소상공인·주민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에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사. 협회의 회계 및 지도·감독

안 제17조는 협회의 사업연도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18조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승인받도록 하며, 안 제19조는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20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

[표 17]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7조(사업연도)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협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 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서 제출) 협회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우선, 현행 정관상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정부 회계연도 역시 동일한 기간임. 안 제17조는 정부 회계연도와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여 협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결산 등을 관리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바람직함.

다음으로, 안 제18조는 매년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19조는 결산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는 산업통상부의 협회 사업 및 예결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 ‘승인’ 조항과 관련하여,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민간협회에 대한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고, 주무부처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협회의 사업운영에 대한 정당화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에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있지만 별도 승인은 받지 않고 있으며, 예결산 및 사업계획·사업보고를 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두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18]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유사입법례: 「상공회의소법」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협회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데, 현행 정관상으로는 법인재산시 잔여재산을 산업통상부

와 협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음.

제정안에 따라 OKTA는 개별법률상 설립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서 주무부처와 지도·감독체계가 명시되어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및 협회의 공공성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 부칙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던 기존 OKTA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

[표 19]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우선, 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이 수반되지

않으나, 현행 OKTA 정관을 법률에 맞게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안 부칙 제1조는 수범자가 제정법 및 관련 제도를 숙지할 시간을 충분하게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사단법인을 개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안 부칙 제2조제1항은 OKTA 총회·이사회 의결 등 기존 법인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즉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함.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제2항은 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지도·감독권한을 명시되고, 기존 정관에 없던 내용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부장관 인가를 다시 받는 절차를 두었음.

안 부칙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인가 이후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 특수법인의 실체를 형성하고, 기존 「민법」상 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멸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새로운 특수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신법인 설립
일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안 부
칙 제2조제6항은 종전 임명일부터 임기를 기산하도록 규정하여 혼선
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1

세계한상대회 개요

■ **‘세계한상대회’***는 1997년 IMF 금융위기 극복과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한민족경제인이 결집하는 **“재외동포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국의 ‘세계화상대회’를 벤치마킹하여 2002년 재외동포재단에서 발족함.

* 세계한상대회는 ‘23년 대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회의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25.11월 운영위원들의 요청, 의결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로 명칭 복원

■ 세계한상대회는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의 플랫폼 기능을 통해, 동포경제인의 국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가별·직능별 재외 동포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엠브렐라 네트워크**로 기능해옴.

■ 국내 **2~3,000여명** 과 해외 **1,00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동포경제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모국의 경제발전과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음.

■ 서울, 부산, 제주, 인천, 광주 등 매년 국내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해 온 ‘세계한상대회’는 **‘23.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제21차 대회(23.10.11~14, 미국 에너하임) 를 한상 네트워크 저변 확대 및 국가별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미국에서 개최하였으며, 이후 제22차 대회(24.10.22.-24., 전주)를 거쳐 2025년 제23차 대회를 25.4.17.-20.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하였음.

■ **대회 운영 체계** : 세계 동포경제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대회 전반 논의·결정·추진

* **운영위원회** : 전 세계 **27개** 동포경제단체, 약 **10만명** 회원의 대표들로 구성

- 주요 운영위 단체 (단체명/회원수)

: 재일한국상공회의소 (10천명), 미주한상총연합회 (50천명), 광저우한국인상공회(12천명), 월드옥타 (7천명), 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20천명), 미주뷰티서플라이총연합회 (7천개사)

참고 2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단체 현황

No	운영위원단체	대표자	설립일	회원수(명)
1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박종범	1981.4.2	7,000
2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유화명	1962.2.22	10,000
3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안창호	2008.6.8	150
4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황병구	1981	54,000
5	중남미한상연합회	최상민	2003.1.1	200
6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	김점배	2008.1.24	100
7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이풍도	2008.10	216
8	아시아한상총연합회	윤희	2003.7.31	300
9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	윤덕창	2009.4.11	9개사
10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김영우	1977.1.15	68
11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정재욱	2014.6.14	220
12	중국한국상회	양걸	1993.12.10	3,500개사
13	상해한국상회	이준용	1993.12.9	3,600
14	청도한국인상회	이덕호	1992.1.4	5,000
15	광저우한국인상공회	임주원	1993	12,000
16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표성룡	2008.7.8	3,000
17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한걸	2011.4.20	200
18	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	고태연	1991.1.25	850개사
19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김년호	2003.12	950
20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하장호	1982	120
21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박광민	1986	20,000
22	미주뷰티서플라이총연합회	나상규	1990.6	7,000개사
23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창무	1978	170
24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	심기호	2018.10.12	
25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고광희	2004.3.27	5,000
26	중국조선족여성기업가협회	이송미	2017.9.3	1,600
27	미주뷰티여성경영인협회	표여식	2002	150